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- ① (수출 유망기업)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- ② (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) 백신·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- ③ (기술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·계약** 포함)한 중소기업
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
** (협약·계약)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■ 지원규모

혁신 성장 지원	융자방식	직접대출, 성장공유형
	대출한도	- (직접대출, 운전) 연간 5억원 이내 -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
	대출기간	-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) - (성장공유형)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의 '지원내용' 참조
	대출금리	- (직접대출, 운전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또는 고정금리 - (성장공유형)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의 '지원내용' 참조
	기타	-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협동화	융자방식	이차보전
	대출한도	연간 5억원 이내
	대출기간	3년 만기일시상환
	대출금리	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
	기타	-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 -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

■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상담 지역본부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
-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(☎ 1811-3655)

금융지원
금융 신용보증기금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견·중소기업 전담기관 : 신용보증기금

■ 지원대상

보증 대상 기업	- (개인기업)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- (법인기업)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- (기업단체) 「중소기업 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※ 대기업 제한,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
보증 대상 업종	-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※ 다만, 도박·사행성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

■ 지원내용

보증종류	내용
대출보증	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• 일반운전자금, 시설자금, 무역금융, 구매자금, Network Loan, 각종 기술개발자금, 할인어음 등
제2금융보증	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• 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종합금융회사, 보험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상호저축은행 등

보증종류	내용
어음보증	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• 지급어음,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
이행보증	기업이 건설공사, 물품납품,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•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차액보증금, 지급보증금, 하자보수보증금 • 보증상대기관 :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,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
지급보증의 보증	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•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
납세보증	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,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,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
(전자) 상거래담보보증	중소기업이 (전자)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

■ 지원규모

■ 창업단계(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)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	예비창업보증	- 창업 전 6개월 이내 - 보증비율 100% - 보증료 0.7%p 차감
	신생기업보증	- 창업 후 3년 이내 - 보증비율 95~100% - 보증료 0.4%p 차감
	창업초기보증	- 창업 후 3~5년 이내 - 보증비율 95% - 보증료 0.3%p 차감
	창업성장보증	- 창업 후 5~7년 이내 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3%p 차감
	유망청년창업 기업보증	- 창업 후 7년 이내 - 대표자 만 17~39세 - 고정보증료를 0.3% 적용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청년희망드림보증	- 창업 후 7년 이내 - 대표자 만 17~39세 - 제조업, 신성장기업 등	- 지원한도 3억 - 보증비율 95~100% - 고정보증료를 0.3% 적용
신중년행복드림보증	- 창업 후 7년 이내 - 대표자 만 49세 이상 - 제조업, 신성장기업 등	- 지원한도 3억 - 보증비율 95~100% - 보증료 0.3%p 차감
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	- 핵심 정책분야 대상 - 기업 및 성장 유망기업	- 신보 보증비율 3년간 100% 보증료 최대 0.2%p 차감 - 은행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최대 0.5%p 지원

■ 성장단계(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)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유망, 특화, 가젤, BEST서비스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	- 고용,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-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1~0.5%p 차감
신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보증	-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1%~0.2%p 차감
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	-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- 수출희망-진입-확장-주력-스타기업	- 보증비율 90%~100% - 보증료 0.2~0.3%p 차감 - 수출스타 0.5% 고정보증료를
고용창출 특례보증	- 최근(향후)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(예정)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	-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- 0.7% 고정보증료를 적용
지식재산(IP)보증	- 우수 지식재산(IP)에 대한 연구개발(R&D), 기술거래,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- 보증비율 90~100% - 보증료 0.2~0.5%p 차감
SMART 융합보증	- 융합설비 도입, 융합제품 생산기업 -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2%p 차감
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	-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, 구축완료기업, 수준확인기업 등	- 보증비율 90~95% - 보증료 0.2~0.6%p 차감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소재·부품·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	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- R&D 및 사업화·성장 단계 기업	- 보증비율 90~100% - 보증료 0.2~0.5%p 차감
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	-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2%~0.4%p 차감
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	-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(취소기업 제외)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0.2%p 차감

■ 성숙단계(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)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유동화회사보증	- 지속성장 유망기업	- 기초자산 편입한도 - 중소기업 200억원 - 중소기업외 350억원
혁신리딩기업	- 양호한 미래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	- 0.5% 고정보증료 - 보증한도 우대 - 보증 분할해지 유예
고용의 질우수기업	-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,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- 좋은일자리 기업(GWP) - 최고일자리 기업(BWP)	- 보증비율 90% - 보증료 GWP 0.4%p 차감 - 보증료 BWP 0.5%p 차감

■ 재도약단계(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)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중소기업 밸류업 보증	- 제조업, 혁신형 중소기업, 고용창출기업,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	- 신규보증 지원(한도 50억원) - 신용보증재조정 (금리우대, 만기연장, 보증료 차감) -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

■ 재도약단계(실패기업의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)

구분	대상기업	우대내용
재도약지원 프로그램	- 신보 단독채무자와 면책 등 법적변제의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	-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- 보증비율 80~100%
재창업지원 프로그램	-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·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	- 신규보증 지원(한도 30억원) - 보증비율 40% - 고정보증료율 1.0%

■ 문의처

- 신용보증기금 (kodit.co.kr)
-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(☎ 1588-6565)